

[첨부]

##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검찰수사의 건 -

### 1.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수사진행상황에 관하여

#### ◎ 배경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8명은 2018년 5월 14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도에 반한 죄) 위반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에 관한 법률 9조 인도에 반한 죄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가 또는 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약치 또는 유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검찰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강제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주무검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엄재상 검사는 2019년 7월 5일 고발인인 민변 변호사들과의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이고,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 이후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이야말로 검찰이 스스로 전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직무유기의 상황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 ◎ 질의내용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가. 피고발인 이병호 등 피고발인 출석조사 여부

나. 기획탈북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권 발동 여부

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처분 시한과 수사결과 발표 예정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등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수사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제사회 앞에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 2.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의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형제40375호)의 신속한 수사 촉구 결정에 관하여

## ◎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18직권0001600, 17진정0807400·18진정0112800(일부 병합)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가. 언론공포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 이후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질의내용

- 가. 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검찰이 취한 조치 및 향후 수사계획은 어떠한지

### 3.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결정문 내용 중 범죄사실에 관하여

#### 가. 증거인멸 범죄사실(정지영,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에 관한 검찰의 수사 요청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정지영(당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으로 밝혀짐)은 피고발인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 전화기를 파괴하여 한강에 버려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기록인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및 이메일 등이 일부만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국군정보사령부는 2015. 12.부터 2016. 4.말경까지 지배인과 담당 직원 간 중요 내용을 통화했던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016. 4. 7. 입국 이후 담당 직원이 보호센터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통화녹음 파일을 백업할 시간이 없었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어 군조정팀장의 지시대로 휴대전화기를 파괴하고 한강에 버려 파일을 보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휴대전화 또한 대포폰으로 통화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라고 적시하여 증거인멸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국군정보사령부가 파악하기로는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이 정지영에게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전화기를 파괴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따라서 휴대폰을

파괴하고 한강에 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만일 위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전화번호만 바꾸면 될 일이지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이를 한강에 버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지영의 휴대전화기는 모두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이고 또한 이를 백업을 할 시간이 없어서 백업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수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휴대폰은 국가에서 지급한 물건이므로 정지영 개인이 함부로 국가 소유의 물건을 폐기할 수도 없으며 폐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폐기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정지영과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이 증거인멸을 자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나아가 위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은닉하였다면 그것을 신속히 찾아야 하고 이들의 범행은 증거은닉이 될 것입니다.

#### **나. 유인·납치 범죄사실(정지영, 이병호, 국가정보원 직원들, 허강일)에 관한 검찰의 수사 요청**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록에 의하면 국군정보사령부는 제1차 입국시도 시 처음에는 지배인이 2016. 2. 10. 국제전화로 담당 직원에게 ‘종업원들 18명 전원이 탈북의사를 밝혔다’ 고 하였으나 곧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의사확인 요청을 받고 2. 13. 지배인에게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배인으로부터 ‘조장 2명 이외 한국행을 알고 있는 종업원은 8명이고 미인지 종업원 8명 역시 닝보에게 근무 후 귀국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19명 모두 명확한 시기와 지역은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는 인원은 3~4명 정도이나 전원 동반할 예정’ 이라는 다른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2. 14. 국가정보원은 다시 종업원의 입국 의사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를 재확인하는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국군정보사령부는 위 제1차 입국시도 실패 이후, 지배인으로부터 2016. 3. 27. ‘종업원들 모두 탈북을 결심하였다’ 는 이메일 연락문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4. 1.에는 ‘2016. 4. 5.에 종업원 모두 탈북을 하는 것’ 으로 통보받았으나 2016. 4. 5.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3명이 보이지 않아 도망간 것 같으며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같이 가지 않을 사람은 가도 좋다고 얘기하자 2명이 추가로 이탈했다’ 고 통보받는 등 지배인을 통한 종업원들의 의사확인이 불명확하였던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첫째 지배인이 최초 접촉 시부터 정보협조의 대가로 종업원들과의 동반탈북을 언급하고 실제로 탈북이 실행되었던 시점에서 종업원들의 자의입국 의사확인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불확실하였던 사실, 둘째 당시 정보협조자로 조력해왔던 지배인의 동반 탈북 동기에 대해 종업원들을 이용해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고 국군정보사령부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 셋째 평소 지배인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만한 정황이 농후하였던 사실, 넷째 2016. 4. 6.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 종업원들이 머뭇거리자 지배인이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과 회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타의 다른 가족들이 동반한 집단탈북사건과 달리 당시 종업원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여 탈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국 의사확인 은 특수한 업무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보호대상으로서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입국과정에 관여한 담당 직원 등 정보기관이 입국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협조자라는 이유로 지배인을 통해서만 종속적 지배관계에 있던 종업원들의 의사확인을 한 행위는 그 직무상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적시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강일이고 정지영을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영과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주범으로서 그리고 허강일은 간접정범의 도구라는 취지로 고발을 제기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만일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처럼 국가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유인·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배인을 주범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직원들을 방조범으로 범죄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검찰 강제수사권의 적극적 행사 요청**

수사의 방향은 강제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부분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지영이 폐기하였다는 휴대폰을 찾아야 하고, 정지영의 직속상관인 정보사 1여단장의 직무실과 휴대폰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사무실을 역시 압수·수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입국 여부에 대하여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응한 종업원들이 있지만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고지)하는 행위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수진)]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